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9

발의연월일: 2021. 1. 14.

발 의 자:홍성국·강선우·김성주

민병덕 • 양기대 • 윤영찬

이개호 · 이장섭 · 전용기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면 검진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등록신청에 한하여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을 통한 서면 검진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검진 이 중단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상황 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 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검진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6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u>이 경</u>
<u>신설></u>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검진은 서면으로
	<u>할 수 있다.</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